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407
------------	-------

발의연월일 : 2018. 7. 13.

발의자 : 이원욱 · 김영진 · 황희
윤영일 · 안호영 · 김현권
임종성 · 김철민 · 우원식
남인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사 자격증의 명의 대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사람 및 그 상대방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건축사 자격증 대여는 건축 설계 및 공사감리의 부실 등으로 이어져 부실·불법 건축물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벌칙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축사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사람 및 그 상대방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수준을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신설 등).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건축사로부터 그 성명을 빌려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누구든지 건축사로부터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18조제5항”을 각각 “제18조제6항”으로 한다.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을 각각 제39조의3 및 제39조의4로 하고,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9조의3(종전의 제39조의2)제3호를 삭제하고, 제39조의4(종전의 제39조의3) 전단 중 “제39조의2제3호”를 “제39조의2”로 한다.

제39조의2(벌칙) 제10조, 제18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사람 및 그 상대방은 2년 이하의 징역

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 본문 중 “제39조 또는 제39조의2”를 “제39조, 제39조의2 또는 제39조의3”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따른 자격등록을 하려면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
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제18조제5항에 따른 개신등
록을 하지 아니하여 자격등
록의 효력이 상실된 건축사

2. · 3. (생 략)

<신 설>

제39조의2(별 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 략)

3. 제10조 또는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
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
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

-----.

1. 제18조제6항-----

2. · 3. (현행과 같음)

제39조의2(별 칙) 제10조, 제18조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
게 하거나 자격증 또는 등록증
을 빌려준 사람 및 그 상대방
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9조의3(별 칙) -----

-----.

1. · 2. (현행과 같음)

<삭 제>

